

제1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08. 6. 24.(화), 10:00

2. 장 소 : 1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최시중 위 원 장
송도균 부위원장
이경자 위 원
이병기 위 원
형태근 위 원 (5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가. 성원보고

나. 국민의례

다. 개회선언

라. 회의공개여부 결정

마. 전차회의록 확인

바. 의결사항

1) 하나로텔레콤(주)의 개인정보 유용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08-15-041)(비공개)

2) 하나로텔레콤(주)의 자사 포털사이트 무단가입 등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08-15-042)(비공개)

3)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구성방안에 관한 건(2008-15-043)

- 서병조 융합정책관의 보고를 받고,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를 원안대로 구성하기로 의결함.

분야	성명	전·현직
방송계(2명)	이동후(女)	인천대 신문방송학 교수 (前) SBS 기획편성부 연구위원
	강태구	4기 방송발전기금관리위 위원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교수
광고계(1명)	정기현(女)	한신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법조계(1명)	김재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前)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학계(2명)	박진우	고려대 전기전자전파공학 교수 한국통신학회 부회장
	이수영(女)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前) 한국방송진흥원 책임연구원
재정(1명)	홍형기	선진회계법인 이사 학교법인 명지학원 감사
문체관부 추천(2명)	한창완	세종대 만화애니메이션학 교수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총무이사
	조희문	상명대 예술대학 영상학부 교수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 다만, 위촉 동의자가 위원 위촉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분야별 예비후보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되, 문체관부 추천 예비 후보자 중 방송발전기금 수혜기관 관련자는 제외함.

4) 2008년도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결정 및 고시에 관한 건(2008-15-044)

- 서병조 융합정책관의 보고를 받고, 2008년도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원안대로 결정하고 고시하기로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기금징수율은 방송광고매출액(판매액)을 기준으로 (주)문화방송과 (주)SBS는 4.75%, KBS 및 EBS는 (주)MBC의 2/3인 3.17%, 지역방송 3.37%,

라디오방송 2.87%로 함.

- KBS, (주)문화방송 및 (주)SBS의 방송광고 매출액 중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인한 방송광고 매출액 및 YTN DMB, 한국 DMB, 유원 미디어의 방송광고매출액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는 차기 징수를 고시 시점까지 유예함.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은
 - 방송관련매출액이 25억 이하인 사업자 : 방송관련 매출액의 1%
 - 방송관련매출액이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사업자
: 25,000,000원 + 25억원을 초과하는 방송관련 매출액의 1.3%
 - 방송관련매출액이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사업자
: 57,500,000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방송관련 매출액의 1.8%
 - 방송관련매출액이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사업자
: 147,500,000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방송관련 매출액의 2.3%
 - 방송관련매출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 377,500,000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방송관련 매출액의 2.8%로 함.
- (주)씨제이홈쇼핑, (주)지에스홈쇼핑, (주)우리홈쇼핑, (주)농수산홈쇼핑, (주)현대홈쇼핑 등 총 5개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은 방송사업과 관련된 결산상 영업이익의 12%로 함.
- 위성방송사업자(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식회사)에게 적용하는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은 방송관련 매출액의 1%로 함.

5) 2008년도 디지털방송 전환 용자사업 계획(안)에 관한 건(2008-15-045)

- 정진우 방송운영관의 보고를 받고, 2008년도 디지털방송 전환 용자사업 계획(안)을 원안대로 결정함.
- 자금력이 취약한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 SO 및 PP에게 용가지원을 통해 디지털방송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디지털방송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 140억원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기로 함.

지원대상	지원분야	지원한도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라디오,종교방송 포함)	○ 디지털제작·편집시설, 송·중계시설 등 디지털방송 전환 관련 시설·장비	1사당 20억원 이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	○ 디지털H/E, 디지털제작·송출시설, 셋탑박스 등 디 지탈방송 전환 관련 시설·장비 (전송망구축과 관련된 분야는 제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 디지털제작·편집시설, 송출시설 등 디지털방송전 환 관련 시설·장비	1사당 10억원 이내

- 대출금리는 전 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 용자계정 신규대출금리-0.5%P(변동)이며, 용자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하고, 1개 사당 한도 내에서 디지털 방송 전환 전체 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지원함.
- 용자사업 지원심사를 위해 외부 방송관련 전문가 및 회계·법률가 등 총 7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하고, 자금 소진 시 까지 수시로 신청서를 접수 하며 매월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 및 지원액 확정기로 함.
- 지원대상 사업자에 대해 중간보고서 제출, 현장실사, 완료보고서 제출 시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 사업집행의 투명성 강화하기로 함.

사. 보고사항

1) 보편적 통신서비스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 신용협 통신정책국장의 보고를 받고,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을 확대하기 위해 7월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실시 등을 통해 올 10월에는 관련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함.
- 이동전화요금 감면대상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18세 미만, 65세 이상(71만명)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전체(153만명)와 차상위계층(263만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동사무소 방문 등 번거로운 요금감면절차 간소화 추진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현재 가입비 면제, 기본료와 통화료의 35% 감면에서 가입비·기본료 면제와, 통화료 50% 감면으로 확대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가입비 면제, 기본료와 통화료의 35%(현재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액)를 감면하기 위해 고시 개정을 추진
- 비용 부담은 현재와 같이 이동통신사업자가 자체감면을 통해 부담하는 방식을 적용함.

2) 2008년 방송소외계층 및 미디어교육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 이기주 이용자네트워크국장의 보고를 받고, 2008년 방송소외계층 및 미디어교육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기로 함.
- 중증장애인 및 기초장애인 및 기초생활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자막, 화면해설, 난청 노인용 방송수신기를 보급하는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에 24억원을 지원함.

- 지상파 4사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자막·수화·화면해설방송 제작지원 및 지역 지상파방송사의 수화방송 제작지원 등 장애인 대상 방송제작으로 30억원을 지원함.
- 미디어교육 내실화 및 과학적 체계구축을 위한 교재 신규개발을 위해 3억원을 지원하고,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활동 등 지원에 2억원을 지원함.
- 6월 말 사업공고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 중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지원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함.

아. 기 타

1) 차기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6월 27일(금)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함.

6. 폐 회(16:05)

※ 11:50 정회, 15:00 속개